

근로자대표 동의서

■ 사업(장) 기본확인 사항(공통)			
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■ 제도관련 사항(공통)			
제도적용일	년 월 일 ※ 사업장에 기금제도가 적용되는 날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하며, 해당일부터 가입자가 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며(과거소급기간 별도) 정기부담금 산정의 시작일이 됩니다.		
부담금 부담수준	☐ 연간임금총액의 1/12 ☐ 연간임금총액의 ()/() ☐ 연간임금총액의 (소수 넷째자리까지 %)		
귀 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에 동의하며, 제도로입 신청에 관한 절차를 사용자에 위임합니다.			
▶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			
근로자대표	노동조합 명칭:	대표자:	20 . . . (서명 또는 인)

▶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※ 전체근로자수 ()명 중 ()명 동의							
순번	성명	생년월일	서명 또는 인	순번	성명	생년월일	서명 또는 인
1				16			
2				17			
3				18			
4				19			
5				20			
6				21			
7				22			
8				23			
9				24			
10				25			
11				26			
12				27			
13				28			
14				29			
15				30			

*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별지 사용가능 합니다.